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바뀝니다!

#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안/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 I.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핵심사항



## 사업주 등의 책임강화

### 법 적용 대상 확대

새로운 유형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대상을 「(중전) 근로자 → (개정)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였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업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 보호 규정 마련

### 대표이사의 의무 ('21.1.1 시행)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도록 하였으며, 수립계획의 성실한 이행의무를 부과함

» 대상 ①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회사 ②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 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 내용 ① 전년도 안전·보건활동 실적 ②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③ 안전·보건관리 체계·인원 및 역할 ④ 안전·보건에 관한 시설 및 비용

### 발주자 의무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공사 계획·설계·시공 등 전 과정에서 조치 의무**를 신설

- ① **계획단계**: 공사규모·예산·기간 등 사업 개요, 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 설계조건 등이 포함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②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금액 산출서 등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
- ③ **시공단계**: 최초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확인결과 조치내용 등이 포함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상

개정법에서는 ①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②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보호대상에 포함**하였으며,

» 법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직종(9개)과 동일하게 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①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원, ②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27종), ③ 학습지교사, ④ 골프장 캐디, ⑤ 택배기사, ⑥ 고객센터기사, ⑦ 대출모집인, ⑧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 대리운전자

##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핵심사항

### 안전보건 조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적용대상 (건설기계 별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기준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설계사·우체국 보험 모집원</li> <li>○ 학습지교사</li> <li>○ 대출모집인</li> <li>○ 신용카드회원 모집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게시설 구비</li> <li>• 공기정화설비 가동, 사무실 청결관리 등 사무실에서 건강장해 예방</li> <li>• 책상·의자의 높낮이 조절,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li> <li>•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한 대응지침 제공 및 관련교육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프장캐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작업(장)의 지형·지반·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li> <li>• 휴게시설, 세척시설, 구급용구 등의 구비</li> <li>•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li> <li>• 운전 시작 전 근로자 배치·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확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li> <li>•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계 유도자 배치, 부동침하 방지 등 조치</li> <li>•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 금지</li> <li>• 꽃음접속기 설치·사용 시 서로 다른 전압의 접속기가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등</li> <li>• 미끄럼방지 신발 착용 확인 및 지시</li> <li>• 고객 폭언 등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 포함한 지침 제공</li> <li>나.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li> <li>다. 휴게시간의 연장</li> <li>라.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li> <li>마.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 등 제출</li> </ul> </li> <li>※ 단, 나목부터 마목까지 조치는 골프장 캐디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함</li> </ul>

##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핵심사항

적용대상 (건설기계 별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기준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택배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장에서 넘어짐 또는 미끄러짐 방지, 청결 유지, 적정 조도 유지 등</li> <li>• 안전한 통로와 계단의 설치, 안전난간 설치, 비상구 설치, 통로 설치 등</li> <li>•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위험물질 보관 등</li> <li>•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해당작업(장)의 지향·지반·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li> <li>•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의 작업 종사 금지</li> <li>• 운전 시작 전 근로자 배치·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확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li> <li>•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제한속도 설정 및 운전자가 준수하도록 할 것</li> <li>•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자가 운전위치 이탈시 원동기 정지,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거는 등 필요한 사항 준수</li> <li>•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 시 기계유도자 배치, 근로자 접촉 방지, 화물적재 시 안전조치 등</li> <li>•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이탈 및 역주행 방지 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li> <li>•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 사용하여야 함</li> <li>• 화물취급 작업 시 섬유로프 점검, 하역작업장의 안전조치 등 실시</li> <li>•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조치</li> <li>• 업무에 이용하는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li> <li>•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 포함한 지침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퀵서비스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차용 안전모 착용 지시</li> <li>•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 불량 이륜자동차 탑승 제한 지시</li> <li>• 업무에 이용하는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li> <li>•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 포함한 지침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리운전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 포함한 지침 제공</li> </ul>

#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핵심사항

## 안전보건 교육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로 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및 특별교육** 실시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b>2시간 이상</b>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b>16시간 이상</b>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 등	
강사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교육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교육 가능함</li> <li>• 교육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li> </ul>	

## 벌칙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안전보건교육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배달종사자



## 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에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가 등록하는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 및 안전모의 보유 여부** 확인

##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핵심사항

- ②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안전운행 및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고지

\* 운전자는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등

- ③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의 수거·배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 » **벌칙**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가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안전규칙

사업주는 이륜자동차 운행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사항 준수(중전 동일)

- » [보호구의 지급·관리]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해야 함
- » [탑승의 제한] 이륜자동차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이륜자동차에 근로자가 탑승토록 해야 함

## 도급 관련 개정사항

### 도급 관련 집행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개념정의를 명확화

####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 도급인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부담 범위 확대

중전

도급인의 사업장 내 22개 위험장소



개정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①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②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 도급인의 책임장소를 확대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사항 등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장의 **안전 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 안전총괄책임자(건설기술 진흥법)를 둔 것으로 봄

- » 대상 ① **상시근로자**(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포함)가 **100명\* 이상**인 사업
- ② **총 공사금액**(수급인 공사금액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는 50명

- » 업무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 중지 및 재개,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감독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

-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 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안전 시설 설치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②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장소 지원**,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위생시설 설치에 필요한 장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③ **도급인은 자신과 관계수급인\***, 자신 및 **해당 공정의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과 함께 **분기에 1회 이상**(건설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 1회 이상) 작업장의 **안전보건 점검**을 하여야 함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은 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함

##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핵심사항

### 정보 제공

유해·위험성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설비의 분해·해체 등 작업, 질식·붕괴 위험 있는 작업 등을 시작하기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 시정 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 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관계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 질식·붕괴 위험 있는 작업 등 도급 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 할 수 있음

### 적격수급인 선정

산재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함

## 도급인의 의무이행 강화

### 내용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 시 「(종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도급인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5년 이내 재범 시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규정을 신설
- » 유죄의 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 내 산재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병과 규정을 신설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 강화

그간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불이행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함

- » 개정법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효과 강화를 위해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토록 하였으며
- »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받을 경우 200시간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 법인에게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함



## II.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 ○ 작업중지의 요건과 범위 명확화

- »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및 동일 작업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작업의 중지(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고
- » 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주변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전부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 한편 **작업중지 해제 시**에는 중대재해 발생 해당작업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고, 해제 심의위원회는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토요일공휴일 포함)**에 개최·심의하도록 함

### ○ 위험성평가 관련 근로자 참여 의무화

-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 범위인지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 법률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근로자 참여사항이 의무화되어 **반드시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함

### ○ 화재감시자 배치 확대

- 중전에는 대규모 공사현장 등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함
- » 개정법령에서는 **불꽃의 비산 거리(11m) 이내·외 가연성 물질,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으로 화재감시자 배치를 확대하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강화하였고
  - » 사업주에게 작업시작 전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 사항 등을 서면 게시하도록 함

### ○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

- 중전에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종(시내·외버스 운송업, 화물 운송업, 택배업 등)은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 » 해당 업종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피로, 화학물질 누출 등에 대한 보건관리가 필요하여
  -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종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
- \*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중전) 운수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제외)의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개정) 운수업의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 작업 중 근로자에게 노출될 경우 건강장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주기적인 측정·검진이 필요한 유해인자에 2종(인듐, 1,2-디클로로프로판)을 추가 지정하였음

### III. 현장에서 지켜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 산재발생 시 조치

상황	조치
산재로 사망자, 부상자, 질병자 발생	산재 발생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인지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산재 발생	사업장 개요,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원인 및 과정 등을 기록·보존*

\* 단,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보존 또는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 대체 가능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 ① 제조업종 중 **식품 제조업, 트레일러 제조업 등에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계·기구·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 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건조설비, 화학설비 등의 기계·기구·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체제

구분	선임 기준	역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업 : 공사금액 20억 이상</li> <li>• 식품품 제조업, 화학물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li> <li>• 농업, 어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li> <li>•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li> </ul>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함
관리감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근로자 5명 이상</li> </ul>	사업장 내 부서단위에서의 산재 예방활동 촉진을 위해 사업장의 생산 관련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는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등 관련 업무 수행하여야 함
안전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품 제조업, 화학물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 상시근로자 50명~500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 500명 이상일 경우 2명 이상</li> <li>• 농업, 어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50명~1,000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 1,000명 이상일 경우 2명 이상</li> <li>• 건설업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하청업체의 경우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 1명 이상 선임</li> <li>-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수*를 달리하고, 1,50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경우 1명 이상의 산업안전지도사 등을 선임</li> <li>* 공사금액 700~3,000억원 증가될때마다 1명씩 추가</li> <li>- 전체 공사기간 100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선임해야되는 안전관리자 수의 1/2 이상 선임</li> </ul>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 수행하여야 함

### III. 현장에서 지켜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구분	선임 기준	역할
보건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 상시근로자 50명~5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500명~2,000명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2,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li> <li>• 기타 제조업 : 상시근로자 50명~1,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1,000명~3,000명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3,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li> <li>• 농업, 어업, 운수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상시근로자 50명~5,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5,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li> <li>• 건설업 : 공사금액 800억 이상(토목공사업은 1,000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경우 1명 이상 &lt;공사금액 800억(토목공사업은 1,000억)을 기준으로 1,400억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gt;</li> </ul>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선임</li> </ul>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 수행하여야 함(안전보건 관리자가 없거나 두어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li> <li>• 농업, 어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 상시 근로 300명 이상</li> <li>•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 이상)</li> <li>•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li> </ul>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 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을 실시

## 고용노동부 연락처



구분	연락처	구분	연락처
고용노동부 본부	1350	의정부지청	031-850-764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02-2250-5772	고양지청	031-931-2864
서울강남지청	02-584-0009	경기지청	031-259-0265
서울동부지청	02-2142-8872	성남지청	031-788-1571
서울서부지청	02-2077-6171	안양지청	031-463-7351
서울남부지청	02-2639-2271	안산지청	031-412-1974
서울북부지청	02-950-9831	평택지청	031-646-1182
서울관악지청	02-3282-9092	강원지청	033-269-358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051-850-6480	강릉지청	033-650-2525
부산동부지청	051-559-6670	원주지청	033-769-0823
부산북부지청	051-309-1552	태백지청	033-552-8603
창원지청	055-239-6580	영월출장소	033-371-6240
울산지청	052-228-1889	광주지방고용노동청	062-975-6331
양산지청	055-370-0935	전주지청	063-240-3399
진주지청	055-752-1752	익산지청	063-839-0031
통영지청	055-650-1949	군산지청	063-450-053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053-667-6360	목포지청	061-280-0100
대구서부지청	053-605-9150	여수지청	061-650-0137
포항지청	054-271-683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064-728-6100
구미지청	054-450-355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042-480-6307
영주지청	054-639-1155	청주지청	043-299-1314
안동지청	054-851-8037	천안지청	041-560-2874
충북지방고용노동청	032-460-4419	충주지청	043-840-4032
인천북부지청	032-540-7980	보령지청	041-930-6142
부천시청	032-714-8788	서산출장소	041-661-5630

※ 안전보건공단 콜센터 : 1644-4544